양육비 체납 타협 프로그램
양육권자의 권리 진술서

DCSS 0021 (Korean) (08/04/08)

지침: *여기에는 양육비 체납 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육권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:*

연체된 양육비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

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아동 양육비 기관은 비양육 부모와 타협 합의를 통해 **정부에** 지불해야 할 연체된 양육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. 비양육 부모가 현재 양육비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면 **정부에** 지급해야 할 밀린 양육비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타협이라고 합니다.

-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체납된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만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에게는 밀린 양육비를 낮출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를 타협하는 데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체납 양육비 타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체납 양육비를 타협하기로 선택한 경우, 비양육 부모는 계약이 체결될 때 일시불로 귀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.
- 타협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, 귀하는 지급되야 할 돈을 받게 됩니다.
- 현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, 귀하가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한 비양육 부모는 현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- 양육비 체납과 관련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부터 전체 양육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